



재무설계사
AFPK[®] 자격갱신 안내

C O N T E N T S


AFPK® 자격갱신 개요	3
1. AFPK® 자격인증의 갱신 절차	4
AFPK 자격인증의 갱신	4
인증기간	4
갱신 신청 방법	4
사진제출 안내	5
자격인증갱신의 불이행	6
자격자동정지 안내	6
자격인증갱신요건의 미비	6
AFPK 자격인증의 회복 및 계속교육학점	7
개인정보의 보호 방침 및 절차	8
2. 계속교육 요건	9
최소 계속교육 학점	9
학점 인정기간	9
계속교육프로그램 요건	10
계속교육의 기본단위	10
계속교육학점 인정기준	10
대학, 대학원에서의 수강	10
전문직 단체에서의 수강	11
전문자격의 취득	11
강의활동	11
저술활동	12
재무설계관련 컨퍼런스 등	13
증빙의 미제출	13
허위보고	13
부록 A. 전문자격의 취득	14

AFPK® 자격갱신 개요

AFPK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의 계속교육요건을 이행하고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매 2년 마다 AFPK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AFPK 자격인증 갱신요건은 1) 계속교육요건, 2) 윤리규정준수서약, 3) 라이선스비납입입니다. 이 중 계속교육요건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성향과 관련된 법률, 규제, 새로운 상품 및 재무설계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20학점)을 할애하게 함으로써, AFPK 자격인증자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전문적인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윤리규정준수 서약은 AFPK 자격인증자가 서약서를 통하여 형사소송, 민사소송, 업계 자율규제 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조사, 착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재무설계 업무수행 시 고객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본 안내서는 AFPK 자격인증자가 AFPK,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표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갱신 및 계속교육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핵심항목, 프로그램 및 이수시간 요건, 학점보고 및 학점증빙 보관 등 갱신절차 및 계속교육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AFPK® 자격인증의 갱신 절차

AFPK 자격인증의 갱신

AFPK 자격갱신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 2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과 1개월 전 2차례 갱신안내가 이루어지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AFPK 자격인증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갱신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증기간

인증기간은 최초인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유효기간만료일은 AFPK 자격인증서 및 한국FPSB 웹사이트(<http://www.fpsbkorea.org>)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방법

(1) 인터넷 접수

- 계속교육학점을 충족한 후 갱신신청이 가능
- 한국FPSB 웹사이트(www.fpsbkorea.org)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2) 우편 접수

다음의 사항을 완료하여 한국FPSB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AFPK 자격갱신신청서, 윤리규정준수서약서

☞ 위 서류는 한국FPSB 웹사이트안내데스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라이선스비 입금증 사본(무통장 입금증 등)

금액: 100,000 원

납부계좌 : 하나은행 294-910005-76504

예금주: 한국 FPSB

라이선스비는 AFPK 자격인증기간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라이선스비는 FPSB와 한국FPSB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쓰여집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AFPK 자격표장의 보호, AFPK 윤리규정의 실행, AFPK 자격표장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 등을 포함합니다.

- ③ 계속교육학점 취득 및 증빙자료 제출 (2. 계속교육학점 인정기준 참조)
- ④ 사진 1매
- ⑤ 명함 1매

※ 제출처 : [121-74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 2동 538번지 성지빌딩 17층
한국 FPSB AFPK 자격갱신담당자 앞

사진제출 안내

자격인증카드 발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인터넷 접수: 한국FPSB 웹사이트 <http://www.fpsbkorea.org>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파일 업로드 (500MB이하의 크기로 JPG파일만 가능)
- (2) 이메일 접수: photo@fpsbkorea.org로 제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기재
- (3) 우편 접수: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사진 뒤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기재

자격인증갱신의 불이행

자격자동정지 안내

만일 자격인증유효기간 내에 자격갱신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바로 다음날부터 AFPK 자격인증의 효력은 자동정지하게 되어 더 이상 AFPK 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한국FPSB는 AFPK 자격자동정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격인증갱신요건의 미비

AFPK 자격갱신신청을 하였으나, 갱신에 필요한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FPSB에서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신청서류의 작성 미비

- ① 윤리규정준수서약서의 모든 항목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 ② 각 신청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2) 라이선스비의 미납

- ① 라이선스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라이선스비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

(3) 계속교육학점의 부족

- ① 해당 AFPK 자격인증자가 취득해야 할 계속교육학점이 부족한 경우
- ② 계속교육학점 20학점 이상 취득하더라도 윤리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AFPK 자격갱신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AFPK 자격인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갱신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해당 신청서는 파기되며, 납부된 라이선스비는 환불됩니다. 이 경우 AFPK 자격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AFPK 자격갱신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AFPK 자격인증의 회복 및 계속교육학점

유효기간 만료 이후 AFPK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접수

- 자격정지 기간 동안 기간계산 된 계속교육학점 충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한국FPSB 웹사이트 <http://www.fpsbkorea.org>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2) 우편접수

- ① AFPK 자격갱신서류의 작성
- ② 라이선스비 100,000원
- ③ 기간계산된 계속교육학점(아래 AFPK 자격인증 회복에 필요한 계속교육학점 참조) 위의 자료를 준비하여 한국 FPSB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사진

만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 계산된 만큼 계속교육학점이 추가되어 갱신에 필요한 계속교육학점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격자동정지 기간이 3년을 경과하게 되면 AFPK 자격인증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가장 최근의 인증일 또는 갱신일이 2006년 12월 이전인 인증자는 5년)

자격인증 정지기간	계속교육요건	이 수 시 기
1년 이하	실지 취득학점	
1년 초과 3년 이하	기간계산	최근 2년 이내

- 1개월 당 계속교육 0.83시간의 비율로 기간계산(소수점 이하 절상)
- 매 보고기간 당 윤리 2학점 필수

개인정보의 보호 방침 및 절차

자격인증자의 개인정보 및 자격인증자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해당 개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가 소속 직원 중 자격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명단과 자격인증자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숫자(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만을 제공한다.
- (2) 지정교육기관이 학사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수강생에 한하여 응시자 및 합격자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자의 인적사항만 제공한다.
- (3) 징계규정에 따른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에 대한 공개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 잠정적 자격정지 및 등록전 유자격자에 대한 승인정지 또는 승인거부의 경우, 해당개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내용과 사유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한국FPSB의 웹사이트나 저널 및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4)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정보를 동의하는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시험의 개인별 취득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계속교육 요건

최소 계속교육 학점

AFPK 자격인증자는 각 인증기간 동안 윤리 2학점을 포함한 20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윤리 2학점: 한국FPSB의 윤리규정, 업무수행기준규정, 징계규정, 자격표장사용규정, 직업윤리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 등에 관한 것으로 한국FPSB가 미리 승인한 교육프로그램(이하 “윤리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최소한 2학점 이상의 윤리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기타 18학점: 한국FPSB에서 제시한 핵심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윤리 2학점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한 것은 AFPK 자격인증자가 준수하기로 한 인증요건인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윤리교육프로그램은 한국FP협회 웹사이트 <http://www.fpkorea.com>에서 온라인강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윤리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만일 해당 프로그램이 핵심항목에 해당한다면 일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윤리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 인정기간

최초 인증 또는 지난 갱신일 이후 2년간의 인증유효기간(이하 “보고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해당 보고기간 중 취득한 최소요건 20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다음 보고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계속교육프로그램으로 취득한 학점을 두 개의 보고기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계속교육프로그램 요건

AFPK 자격인증자는 다음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계속교육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FPSB가 인정하는 재무설계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이하 “FP전문교육기관”)이 한국FPSB의 별도 등록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계속교육프로그램
- 정부 또는 업계 자율규제기관이 개설하는 연수과정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종합재무설계 전문능력향상에 기여한다고 한국FPSB가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
- 기타 수강생의 전문능력향상에 기여한다고 한국FPSB가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

계속교육의 기본단위

계속교육과정의 기본단위는 1시간(이하 “학점”)으로 최소 50분 이상이어야 하며, 재무설계(회계, 마케팅 관련 제외)를 다루는 강의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계속교육학점 인정기준

계속교육학점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한국FPSB의 커리큘럼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대학, 대학원에서의 수강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실시간)를 수강한 경우, 재무설계(회계, 마케팅 관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속교육학점을 인정합니다.

- 1년에 2학기제인 경우: 한 학기 이수학점 당 15학점의 계속교육학점 인정
- 1년에 4학기제인 경우: 한 학기 이수학점 당 10학점의 계속교육학점 인정
- 0학점 짜리 과정인 경우: 1시간당 1학점의 계속교육학점 인정

예) 1년 2학기 제에서, 3학점이 인정되는 투자론을 수강하는 경우
: $3 \times 15 = 45$ 총 45 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이 인정

☞ 투자론에서 다루어지는 핵심항목: 투자위험, 위험의 측정, 투자상품, 투자수익의 유형, 채권 및 주식 가치평가 방법, 포트폴리오 성과 측정, 레버리지 및 투자 활용, 헷징 및 옵션 전략, 자산 배분, 가격결정모델, 효율적인 시장가설 등

증빙자료로는 보고기간 동안 수강한 과목들이 명시된 성적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직 단체에서의 수강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공인중개사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을 포함하여 한국FPSB가 인정하는 전문직단체, 전문직 연수기관, 또는 각 금융기관이 개설하는 연수과정(집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재무설계(회계, 마케팅 관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인정합니다. 책자, 전자매체, 온라인매체를 통한 자습용 교육프로그램인 경우에는 2시간당 1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인정합니다.

증빙자료로는 해당 전문직 단체에서 발급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자격의 취득

재무설계(회계, 마케팅 관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기간 중 전문자격 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부록A 전문자격의 취득에 따라 계속교육학점을 인정합니다. 부록A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재무설계(회계, 마케팅 관련 제외)에 해당하는 전문자격 시험에 합격 또는 취득한 사실에 대해 계속교육학점을 인정합니다.

증빙자료로는 해당 전문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의활동

재무설계 전문직업인 및 AFPK 또는 CFP 자격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재무설계(회계, 마케팅 관련 제외)를 주제로 한 강연 또는 수업의 강의 활동에 대해서는 1시간 당 2학점을 인정하며, 보고기간 중 요구되는 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강의하는 경우 각 보고기간당 1 차례에 대해서만 학점을 인정하며, 재무설계 종사자를 위해 만들어진 강의가 아닌 경우, 즉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쇼, 고등학교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로는 강의기관에서 발급한 강의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강의기관
-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 강의제목 및 내용
- 강의대상
- 강의장소
- 강의기관의 날인

저술활동

재무설계(회계, 마케팅 관련 제외)와 관련된 논문 또는 책자를 출판한 경우 저자의 전문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면 해당 논문과 책자의 저술준비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하여 한국 FPSB가 결정하여 계속교육학점을 인정하며, 보고기간 중 요구되는 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A 또는 회사 뉴스레터 기사 등은 일반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짧은 신문기사, 일간신문이나 전문잡지 등의 기고문으로서 저자 또는 필자가 표장 사용규정에 따라 CFP® 또는 AFPK® 자격인증자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출판된 논문 또는 책자에서 아래사항이 나타난 부분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판된 논문 또는 책자 표지
- 저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일, 페이지수가 나타난 부분
- 목차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간략한 정보

재무설계관련 컨퍼런스 등

한국FPSB의 승인을 받은 포럼,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해서는 2시간 당 1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주최기관에서 참석자 리스트를 한국FPSB로 제출하게 되며, 개인이 따로 증빙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빙의 미제출

교육기관에서 수료자명단을 한국FPSB로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FPK 자격인증자가 직접 계속교육학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FPSB에 증빙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계속교육학점의 보고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후 한국FPSB에서 원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 원본은 따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보고

계속교육학점에 대한 허위보고는 한국FPSB의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한국FPSB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AFPK 자격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록 A. 전문자격의 취득

• 공인회계사	45	계속교육학점
• ChFC(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30	
• CLU(Chartered Life Underwriter)	30	
•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30	
• 변호사	30	
• 세무사	30	
• 보험계리사	20	
• 감정평가사	20	
• 법무사	20	
• 변리사	20	
• FRM(Financial Risk Manager)	15	
• 보험중개사	15	
• 손해사정사	15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15	
• 증권분석사	15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15	
• 재무위험관리사	15	
• 종합자산관리사(생명, 손해보험협회)	15	
• 자산관리사(금융연수원)	15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10	
• 공인중개사	10	
• 금융투자분석사	15	
• 펀드투자상담사(부동산, 파생상품, 증권)	각	5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 2동 538번지 성지빌딩 17층
<http://www.fpsbkorea.org> / info@fpkorea.com